

명예졸업에 관한 규정

2003. 6. 1 제정
2014. 3. 1 일부개정
<학적·수업지원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과 자격)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예졸업자로 선정한다.

1. 사회·국가적 공헌이 현저하여 본교의 명예를 크게 빛낸 사람
2.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

<개정 2014.3.1.>

제3조(인정 학과(부)) 명예졸업자의 졸업장에 기재하는 소속은 해당자의 입학 당시 소속 학과(부)로 한다.

제4조(선정절차) ① 명예졸업생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·절차에 따른다.

1. 해당 대학 교수회의 결정을 거쳐 대학장이 추천
2. 학적관리위원회의 심의
3. 교무위원회의 심의
4. 총장의 승인

② 제1항 제1호의 추천은 공적조서(증빙자료 포함)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.

<개정 2014.3.1.>

제5조(명예졸업장) ① 총장은 명예졸업자에게 명예졸업장([별지1])을 수여한다.

- ② 명예졸업장의 수여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, 연 2회로 한다.
- ③ 명예졸업장은 행정관청에 대한 보고·등록의 대상이 아니다.

<개정 2014.3.1.>

제6조(명예졸업의 취소)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서식(I)>

명예 호

명 예 졸 업 증 서

성 명 : ○ ○ ○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○○ 대학 ○○ 학과 ○ 학년 재학 중

하였기에 명예졸업을 추천함

년 월 일

○ ○ 대학장 ○ ○ ○ (인)

위 추천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총 장 ○ ○ ○ (인)